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당직근무)”를“(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고, 제1항중“그 외의 당직근무자(이하“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를“기타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로 하며 제2항중“당직근무에”를“당직 및 비상근무에”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제목중“근무시간”을“근무시간등”으로 하고, 동조중“근무시간을”을“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로 한다.

제17조제1항의 표의 연가일수란중“3일”을“4일”로,“8일”을“10일”로,“11일”을“13일”로,“14일”을“16일”로,“17일”을“19일”로,“20일”을“22일”로 하고, 근속기간란중“5년이상”을“5년이상 6년미만”으로 하며, 동표의 근속기간란에“6년이상”을, 연가일수란에“23일”을 각각 신설한다.

제17조제2항 단서중“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편중되지 아니하도록”을“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 되도록”으로 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의 제목 “(연가일수에의 산입)”을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제21조제1호중 “참가하려 할 때”를 “참가할 때”로 하고, 제3호중 “참가하려 할 때”를 “참가할 때”로 하며,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7.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제22조제1항중 “휴가률”을 “경조사휴가률”로 하고, 제2항중 “휴가률”을 “출산휴가률”로 하며, 제3항중 “생리휴가률”을 “여성보건휴가률”로 하고, 제4항중 “휴가률”을 “수업휴가률”로 하며, 제5항중 “특별휴가률”을 “포상휴가률”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때

제22조제6항중 “휴가률”을 “퇴직준비휴가률”로 하여 이를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교육감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률을 허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7조 본문중 “공무원복무규정을”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